

Q : 사전적합제도(시험확인서)가 무엇인지요?

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동법 제11조 제 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.

Q : 사전적합제도(시험확인서) 증빙 인증 마크란 무엇인가요?

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시험 확인 후 오염물질방출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실내 마크가 표기된 시험확인서를 발급한다. 따라서,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로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에 표기된 실내 마크가 부착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

시험확인서마크

Q : 시험확인서와 일반성적서 증빙 효력의 차이점?

구분	시험확인서	일반성적서
차이점	- 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 3 절차에 따름 - 시험기관 담당자가 직접 생산 공장 혹은 물류 창고 방문하여 직접 복수의 시료 채취	- 방출량 수준 및 기준 이내 여부를 개인적 차원에서 확인 - 개별적으로 시료 혹은 시험편을 시험기관에 제출
비교사진		
증빙 효력	법적인 효력이 있음	증빙서류 사용 불가

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1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확인 적합 건축자재임을 증빙하는 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절차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험기관에 방출 여부 확인 신청을 하여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『시험확인서』만 증빙서류로 효력이 있습니다. 따라서, 동법시행규칙 제 10조의3 절차가 아닌 기타 방출량 확인 등을 위해 별도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오염물질방출기준치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11조에 따른 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로 볼 수 없습니다.

－ 환경부 질의(처리기관 접수번호 2AA-1808-499790, 2AA-1809-062703)에 대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답변

Q : 벌칙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공급한 제조자는 동법 제 14조, 16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이 가해지며,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자가 적합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**설치자(시공자)는 본의 아니게 형사처벌(징역 혹은 벌금)을 받는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.**

Q : 관할청은 어디인가요?

각 유역(지방) 환경청입니다.

－ 환경부 질의(처리기관 접수번호 2AA-1809-062703)에 대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답변

Q : 공사 진행 중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

각 유역(지방) 환경청에 민원 제기 및 위법행위의 적발시에는 제조자에게는 과태료를, 설치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벌칙 부과 후 적법한 건축자재로 교체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

－ 환경부 질의(처리기관 접수번호 2AA-1809-062703)에 대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답변

Q : 신축현장만 적용이 되는 건지요?

실내공기질관리법제 11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, 다중이용시설 실내주차장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도 모두 적용됩니다. 따라서 신축 및 개보수 현장에서도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축자재(실내 인증마크 취득 건축자재)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
－ 환경부 질의(처리기관 접수번호 2AA-1804-223850)에 대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답변